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 모집 공고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단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할 자문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개 요

□ **모집인원** : 00명

□ **위촉기간** : 2027. 1. 1. ~ 2027. 12. 31.(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직무내용** : 공단 업무와 관련한 모든 범위의 법률자문

□ **자문료** : 월 100만원(부가세 포함, 소송 의뢰 시 비용은 별도)

2 응모자격

□ **(자격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ㅇ「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
- ㅇ「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 ㅇ「변호사법」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및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 ㅇ「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서 공단의 법률자문을 수행할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응모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등은 지정된 전담변호사를 기준으로 판단함(전담변호사 외 타변호사 법률자문 수행시 해촉 사유에 해당)
* 동일 법무법인에서 각 전담변호사별 지원 가능

□ **(제한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 단, 법무법인·법무조합 등의 경우 자문 위촉계약에 소속변호사 중 징계전력이 있는 변호사의 자문 등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 제외

ㅇ 공단 자문변호사로 해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국가공무원법」제2조에 의한 공무원직에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공단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격요건 및 제한사유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3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1. 3.(화) ~ 11. 17.(화)

* 필요 시 연장 공고 가능

□ **접수방법** :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한 지원서 및 기타 응모서류를 스캔파일로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담당자 메일(rae12@energy.or.kr)로 제출

* 이메일 제목에 반드시 "(자문변호사지원서) 지원자 성명 또는 상호" 기재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ESG경영처 김철영 대리(전화 052-920-0288)

4 제출서류

□ **개인변호사**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자문변호사 지원서(사진 첨부) [별첨 1]
다.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 - 상세(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라. 재직, 자문·고문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변호사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법무법인**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전담변호사에 대한 위 개인변호사 제출서류중 나호부터 바호까지의 서류

* 제출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5 선정 방법

□ **평가방법**

○ 제출서류에 대해 변호사 경력, 법률분야 학위 및 연구·포상 실적, 공단 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소송자문 수행 경험, 자문변호사 업무수행계획, 윤리관·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별도 면접평가 없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존 자문변호사 해촉시 또는 예산 증액시 계약월로부터 해당연도 잔여기간 동안 평가점수 순으로 위촉대상자 선정
* 증빙자료가 없는 실적 등은 평가에 미반영
* 영문, 법제 분야 자문능통자 및 에너지 해외자원개발 분야 경험자 우대

□ **결과발표**

○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12월 중 개별 통지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위촉대상자 선정 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모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자문변호사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자문변호사 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은 공단「소송 및 법률자문 처리규정」에 따름

□ 공모일정 및 모집인원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 1〕

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 지원서

1. 인적사항

사 진 (3.5cm × 4.5cm)	성 명	[한글]	[한자]	
	소 속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휴대폰	
	이메일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졸업/수료)
학 력 사 항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제 목	게재년월	수록지명	발행처
연구 실적				

* 직무내용과 관련된 학술, 저술 등 기재

	시험종류 및 합격기수	연수원/로스쿨 기수	변호사자격취득일
변호사 자 격			

법 무 법 인	법인명		대표자	
	법인주소			
	전문분야		법인규모	(변호사 수 등)

*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전담변호사로서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2. 업무수행 능력

가. 주요 경력

	근 무 처	직위	직무내용	근무(활동)기간
경 력 사 항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법무법인·정부기관·공공기관·기업체 등 근무경력, 개인변호사 활동경력 자문변호사 경력 등을 기술

나. 최근 10년간 주요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공공기관 자문소송, 에너지 분야 등 공단 업무 관련 실적 위주)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필수(개인정보 비식별처리 등 정보관련법령 유의) *(소송의 경우 본인 수행 확인가능한 판결문 또는 판례검색사이트 검색가능 사건번호)*

다. 공익활동, 사회공헌, 수상·포상 내역, 기타사항

기재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필수(개인정보 비식별처리 등 정보관련법령 유의)

라. 지원동기 및 자문변호사 업무수행 계획(공단관련 업무의 전문성, 월 자문가능건수, 긴급자문 또는 일반자문 평균 회신기간 등)

본인은 위와 같이 한국에너지공단 자문변호사 공모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며, 위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당해 위촉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또는 인)

〔별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자기소개 관련 정보, 기타 위촉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공모절차의 운영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위촉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에 사용 됩니다. ① 본인 확인에 이용: 생년월일, 성명, 증명사진 ② 지원자와의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③ 지원자 평가에 이용: 출신학교,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④ 단,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3 **자문변호사 실적평가표**

자문변호사 실적평가표

□ 자문변호사 :

□ 평가대상기간(위촉기간) :

평가항목		평점기준					득점
		A	B	C	D	E	
자문의 정확성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20	18	16	14	12	
자문의 유용성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20	18	16	14	12	
자문의 적시성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20	18	16	14	12	
성실성	요청받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는가?	20	18	16	14	12	
청렴성	변호사 윤리, 공단과의 이해관계 회피 등 청렴의무를 준수하였는가?	20	18	16	14	12	
합 계		총 () 점					
기타 의견							

평가위원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붙임4 **자문변호사 공모평가표**

자문변호사 공모 평가표

□ 자문변호사 지원자 :

□ 평가대상기간(위촉기간) :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점기준					득점
		A	B	C	D	E	
기본수행능력 (30)	① 변호사 경력 (판·검사 경력 포함)	12년 이상	9년 이상~ 12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3년 미만	
		15	14	13	12	11	
	② 법률분야 학위 및 연구·포상 실적	박사학위 및 연구·포상 실적 2건 이상	박사학위	석사학위 및 연구·포상 실적 2건 이상	석사학위	학사학위 이하	
		15	14	13	12	11	
소송자문능력 (60)	③ 공단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소송자문 수행 경험	30	25	20	15	10	
	④ 자문변호사 업무 수행계획	30	25	20	15	10	
도덕성 청렴성 책임감 (10)	⑤ 윤리관, 사회공헌 활동 실적	10	9	8	7	6	
합 계		총 () 점					
평가위원	소 속		직위		성명	(서명)	

※ 기본수행능력 항목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총괄부서장이 사전 산정할 수 있음

※ 연구·포상 실적은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법률분야의 논문, 연구보고서, 저서, 학술발표 및 정부·공공기관·변호사단체 등의 포상·표창 실적을 말하며,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은 제외함

붙임5 소송 및 법률자문 처리규정

제19조(자문변호사 모집) ① 공단은 자문변호사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하되, 지원자 부족 등 공모방식만으로 위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집할 수 있다. 단, 재위촉하거나 1회성 자문을 위한 계약 시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원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일간지 등의 매체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자문변호사 운영위원회) ① 자문변호사 후보를 심사하고 재위촉 시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자문변호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위 원 장 : 총괄부서장<개정 2024.10.16.>
2. 위　　원 : 제22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3. 간　　사 : 총괄부서내 담당자로 지정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은 내·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회 구성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 심의·의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2조(위원의 자격)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단 업무 관련 또는 법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 연구·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공단 업무 관련 기술사 자격 취득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대학 또는 전문대학 공단 업무 관련 또는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인 자
5. 공단 부서장

제24조(지원자 평가) 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자문변호사 공모 평가표에 의하여 지원자의 공단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전문성, 유사 자문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문변호사를 선임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경우 지원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하는 무징계증명원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12.4.>

제28조(자문변호사 실적평가) ① 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시 위촉기간 중의 실적 및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2.25>

② 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자문변호사 실적평가표에 따라 위원회에서 실시하되, 각 항목당 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의 위원별 평균 점수(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2.24.>

※「소송 및 법률자문 처리규정」 전문 별도 첨부